



# 강 남 구



수신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행정소송 응소방침

우리구를 당사자로 하는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아래와 같이 응소하고자 합니다.

### 1. 사건내역

○ 사 건 명 : \*\*\*\*\*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

○ 당 사 자 : 원 고 \*\*\* 외 4명

피 고 서울특별시강남구청장

\*\*\*\*\*

\*\*\*\*\*

\*\*\*\*\*

○ 소 가 : 736,196,226원

○ 관할법원 : 서울행정법원 제4부

### 2. 청구취지

○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

○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

### 3. 청구원인

-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대주주에 ‘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, 배우자’ 모두를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소득세법 제9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7조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, 자기책임원칙과 재산권 및 연좌제 금지조항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조항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의 과세처분 또한 위법임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

4. 관계법령 : 지방세법 제86조 제1항, 동법 제103조 및 제103조의 3

### 5. 응소이유

- 지방세법 제86조 제1항에 지방소득세 부과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면 지방소득세 부과도 정당함

- 따라서, 역삼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70,034,565원을 적법하게 부과하였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액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 7,003,450원 부과처분은 정당함에 따라 본 소송에 적극 응소하고자 함

6. 소송수행자 : 지방세무주사 표지영, 지방세무서기보 박형진

붙임 소장 사본 및 과세내역 각 1부. 끝.

★주무관 **박형진** 지방소득세 5팀 표지영 세무2과장 **김광수** 기획경제국장 전결 07/06  
문경수

협조자 규제개혁법제팀장 **박도규**

시행 세무2과-22792 ( ) 접수 ( )  
우 135-705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/ www.gangnam.go.kr  
전화 02-3423-5756 /전송 02 21042464 / hyungjiny@gangnam.go.kr / 부분공개